

화협상담실

화협상담실은 보험과 안전점검, 방재기술지도 등 특수건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궁금증과 알고 싶은 사항을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

● 방재상담

㉠: 목조건축물에 방화벽을 설치할 경우의 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목조건축물은 연소시 화력이 강하므로 방화벽을 무근콘크리트나 조적조로 설치하면 소화활동시 온도차로 인하여 균열 또는 변형으로 도괴될 우려가 있어 부적합하나 일정 두께 이상으로서 안전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註: 건축법 시행령 제26조(내화구조) 및 제31조(목조건축물의 방화벽) 참조]

건축물의 방화벽은 내화구조로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돌출되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 이때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감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물론 방화구획된 각 구획의 연면적은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의자 : 조영화화(주) 응답자 : 점검1부)

㉢: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말하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 중에서 지하2층 지상11층이상인 건물의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여부와 완화될 수 있는 조건을 알려주십시오.

㉣: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11층이상 또는 지하3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을 제외) 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상 11층이고 지하2층 건물이면 1층에서 부터 그이상 층만 대상이고 지하층은 피난계단만 설치해도 되며 지상5층, 지하3층의 경우에는 지하3층부터 1층까지만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면 됩니다.

특별피난계단 설치의 완화조건으로는 11층이상 부분의 거실을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할 경우에는 완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자: 한일B/D 응답자: 점검1부)

㉤: 전기설비의 방폭기구의 종류와 KS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전기기계기구의 방폭구조라 함은 가스증기 위험 장소에서 사용에 적합토록 특히 고려한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 耐壓방폭구조: 전폐구조로서 용기 내부에서 가스폭발이 생겨도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고 또한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는 구조.

• 內壓방폭구조: 용기내부에 보호기체, 예를들면 신선한 공기 또는 불연성가스를 압입하여 內壓을 유지함으로써 폭발성가스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 油入방폭구조: 불꽃, 아아크 또는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고온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유중에 넣어 유면상에 존재하는 폭발성가스에 인화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

• 安全増방폭구조: 상시 운전중 불꽃 아아크 또는 과열이 생기면 안되는 부분에 이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구조상 또는 온도상승에 대하여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 本質安全방폭구조: 상시 운전중이나 사고시 (단락, 지락, 단선 등)에 발생하는 불꽃, 아아크 또는 열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에 점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

• 特殊방폭구조: 상기 이외의 구조로서 폭발성 가스의 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시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확인된 구조.

• 粉塵방폭구조: 분진위험장소에서 사용에 적합하도록 특히 고려한 방진구조로서 외부의 분진에 점화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방진성의 정도에 따라서 보통방진구조와 특수방진구조의 2종류가 있다. 이 중 분진방폭특수방진구조는 폭연성분진이

존재하는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방진성을 높인 구조를 말합니다.

이밖의 내용은 지면관계로 상세한 설명이 어려우므로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담

☞: 화재보험에 있어서 건물과 그 건물속에 소재한 동산(기기 및 비품 등)을 분리하여 화재보험에 부분한 경우 이재시 보상상의 의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1 건물의 동산을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부분한 경우에 있어서 건물 또는 동산중 어느 일방에 기인된 화재발생으로 건물과 동산에 손해가 발생되었을때 화재발화원인된 건물이나 동산의 손해보상은 정액보상되는지?

2 임차건물에 있어서 건물은 건물주가, 동산은 임차자가 동일 보험회사에 부분한 경우(부보기간 상이함) 건물 또는 동산중 어느 일방에 기인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되었을때 화재의 발원인된 건물이나 동산에 대한 보상의 면책이나, 건물주 또는 임차인에 대한 대위권 발생의 소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험회사의 손해에 대한 보상여부는 사고원인 및 보험약관상의 유·무책에 관한 규정(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않는 손해)에 따라 결정되며, 손해의 보상액(지급보험금)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보험가입금액)과 보험목적물의 시가(보험가액)를 비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질의1에 대하여:

화재가 하나의 보험목적물에서 발화하여 다른 보험목적물로 (예: 건물에서 동산으로 또는 동산에서 건물로) 연소되었을 경우 최초 발화된 목적물의 화재원인이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발화된 목적물과 연소된 목적물에 대하여 모두 보상하지만 최초 발화된 목적물의 화재원인이 면책사유에 해당되면 발화된 목적물은 물론, 연소된 목적물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질의2에 대하여:

임대인이 건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건물의 화재원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건물의 보험금을 지불하고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나,

KSC0906 KSC8001 KSC0804 KSC0904 KSC0912
KSC1301 KSC1302 KSC4805 KSC7501 KSC7601
KSC7604 KSC7607 KSC7702 KSC7703 KSC8102
KSC8104 KSC8302 KSD3503 KSL2002

(질의자 : 과학교구상사 응답자 : 점검1부)

임차인이 수용동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건물주인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 임차인소유의 재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임대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만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이때 보험금의 지급은 가입한 보험회사나 보험기관의 상위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질의자 : 한국과학기술원 응답자 : 업무부)

☞: 주민 190세대가 귀책회 화재보험에 단체로 가입한 아파트로서 공인회계감사의 권고로 공동시설물인 보일러등에 대한 보험가입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약관의 보통약관 3조의 해석과 별도로 보일러폭발에 대한 화재보험가입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제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건물의 수용도에 공하기 위한 건물의 종물과 전기, 가스, 냉난방 등 부속설비는 건물에 포함시키므로 보험목적물에 해당된다는 규정으로서 아파트의 난방만을 위한 보일러 사고의 폭발사고는 주택화재 보험에서 담보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자 : 현대APT 응답자 : 업무부)

☞: 5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계약시 어떤 종류의 특약을 추가하여야 하는가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취급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서는 별도의 특약없이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손해외에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의 건물은 특수건물에 해당하므로 수재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특약없이 인명을 제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자 : 해남B/D 응답자 : 보험1부) ☞